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 이 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	9

(2015. 9. 2)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6월 2일(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5년 6월 5일(금)

4.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 동 조례안은 외래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대비, 지속가능한 마포 관광발전을 위한 마포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 가.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 나.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안 제3조)
- 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마. 잉여금 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 할 수 있다는 특별회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시 발생하는 세입, 세출 및 잉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사업의 예산은 특성상 관광객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관광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 조성 후 기금보다는 예산 당해 연도 처리 원칙

에 따라 회계처리가 되는 특별회계 설치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2015. 4. 23. ~ 5. 13.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 주요내용으로는

- 가.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은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효율적·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 나. 안 제3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함
- 다. 안 제4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함
 - 관광진흥센터에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사용료 및 임대료 포함)
 - 구에서 개발한 관광브랜드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 수익금
 - 센터에서 운영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 서울특별시 및 국가에서 센터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라. 안 제5조에서는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규정함
 - 구의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 센터 및 센터에서 활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비
 -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바. 안 제6조에서는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때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도록 함
- 사. 안 제7조에서는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2015. 6. 2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97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1억 원과 재계약 시 구의회 동의에 대한 조례가 결정 된 이후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2015.3.18. 합정3구역 기부채납시설 활용방안으로 마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포 관광진흥센터 설치·운영계획』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를 위해 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그 간 문화관광과에서 마포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중·장기적 계획인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4개년 : 2015~2018)」을 수립하여 2015. 7. 10.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보고회를 가진 바 있고, 마포구와 MBC가 공동 추진하는 상암동 「DMC 문화축제계획」 설명보고회 개최는 물론 2015. 9. 3.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마포구 관광업계 관련인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포관광 조찬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마포관광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
- 따라서, 동 조례안은 마포구 관내에 관광진흥센터 및 종합안내소 설치·운영과 위탁관련 세부적인 기준과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과 동시에 동 조례도 제정되어야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마포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구민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임.
- 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의 재원을 충당하는 관광사업 특별회계(5년 간)를 보면 세입은 약 19억 5천만 원이고 세출은 약 16억 5천만 원으로 약 3억 원의 순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나, 세입분야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를 보면 합정3구역 및 상암DMC 시설 사용료는 월임대료에 따른 수입

으로 예상수입을 추계할 수 있으나,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 약 1,9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4. 1. ~ 6. 5. 까지 실시한 ‘제1회 마포구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37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4작품(우수 2, 장려 2)이 선정되었으나, 실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마포구 특산품인 관광기념품 수입금으로 1,9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 등 비용추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부서에서는 세입분야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함께 마포관광기념품 개발 등 세입방안도 강구하여 재원부족으로 마포관광산업활성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성공적인 마포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임.

관 계 법 규

지방재정법

[시행 2015.5.13.] [법률 제13283호, 2015.5.13. 일부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제835호(2011.11.3. 제정)

제6조(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관광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특별회계와 기금 성격 비교

구 분	특별회계	기 금
근 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관련조문	<p>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p>	<p>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p>
설치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액 총당 • 특정사업 운영 • 특정자금 보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원조달 및 운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부담금등 다양한 수입원으로 응자 사업 등 사업수행
확정절차	<p>사업부서 예산요구 ↓ 예산부서 예산안 편성 ↓ 지방의회 심의·의결</p>	<p>기금운용부서 계획 수립 ↓ 예산부서 협의·조정 ↓ 지방의회 심의·의결</p>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짐(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
수입과 지출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 초과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결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심의·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심의·승인